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91호 2018. 12. 20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57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취소사항 고시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591호

사천시 고시 제2018-257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취소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취소한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12. 20.

사 천 시 장

1. 허가취소 연월일 : 2018. 12. 13.
2. 취소사유 : 시설물 유지·관리의 어려움으로 취소 요청
3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: 제2012-6호(2012. 12. 14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선박접안용 부잔교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경남 사천시 신수동 14번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94㎡ (직접 141, 간접 253)
5. 허가취소 대상자
 - 성 명 : 조 영 찬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신수서길 116(신수동)